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연구

김수근 · 백신원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

1. 서 론

1.1 연구 목적

건설산업은 총 취업자 수 10% 미만에 불과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재해의 30%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96년도 기준 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은 정부적 차원에서 자주적이고 개호기적인 추진을 필요로 하고 생산을 위한 시공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공사의 계획, 설계 단계부터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건설재해 예방활동이 종합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 파동적인 활동과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활동에 필수적인 예산 집행상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기업주는 안전관리활동이 생산의 수단과는 별개로 인식하여 안전관계 업무추진, 관계시설물의 개선 내지는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우리 건설업계의 실정이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안전관리비의 산정기준에 의해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90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법 30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개정을 거듭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규모별, 공정별, 다양한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법규상의 안전관리비로 가시설중 안전시설물, 인건비등 일부에만 사용토록 되어있어 현실적으로 그 채용이 적합하지 못하다. 또한, 공사 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일정 사용기준의 명시는 기성공정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로 하여금 가집행 및 타용도 전용의 현상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보건안전관리비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실태조사를 통해 재조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과 확인 및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을 꾀함으로써 안전관리비 사용의 정확화에 기여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¹⁾.

1.2 연구 방법 및 범위

관계법령 고시와 논문 등을 통한 문헌자료를 통하여 설문문을 만들어 인터넷상의 설문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한 설문문을 작성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여건과 관계법령과의 상이한 점을 찾아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비의 활용을 위한 방안제시

2. 표준안전관리비

2.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산정기준

건설업 시공업자에게 안전관계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 주어 건설업에서 재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88년 노동부 고시 88-13호('88.02.15)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이 공포 시행되어 오던 중 고시 89-4호('89.02.10)로 개정되었다.

또한, 90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법 제30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고시 91-39호 ('91.07.04)이후 4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고시 97-42호(97.12.23)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고시 제 2002-15호에서는 명칭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법으로 변경되었으며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사의 종류를 산업재해보상법의 공사분류에 의해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등 5종류로 구분하고, 또 공사비 5억원 미만, 5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등 공사규모별 3단계, 전체 15종류로 나누어 직접노무비에 재료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이 안전관리비로 계상하게 하고 있다¹⁾.

<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자료: 노동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02

| 공사종류 \ 대 상 액 | 5억원미만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 50억원이상 |
|--------------|---------|--------------|---------|---------|
| | | 비율(X) | 기초액(C) | |
| 일반건설공사(갑) | 2.48(%) | 1.81(%) | 3,294천원 | 1.88(%) |
| 일반건설공사(을) | 2.66(%) | 1.95(%) | 3,498천원 | 2.02(%) |
| 중 건설공사 | 3.18(%) | 2.15(%) | 5,148천원 | 2.26(%) |
| 철도·궤도신설공사 | 2.33(%) | 1.49(%) | 4,211천원 | 1.58(%) |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1.24(%) | 0.91(%) | 1,647천원 | 0.94(%) |

2.3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²⁾

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 2]의 사용내역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표 3]의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표 2]의 본사사용은 영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별표 4 제 10호 및 제 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 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 년간 (1.1~12.31)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³⁾

| 항목 | 사용내역 | 사용기준 |
|-----------------------------|-------------------------------------|-----------------|
|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 |
| 2. 안전시설비 등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낙하 •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
| 3.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
|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교육비 등 |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
|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근로자 건강진단,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
|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대가 |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
| 8. 본사사용비 | ◎본사 안전전담부서 활동비용 |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하 |

<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²⁾

| | | | | |
|------|----------------|----------------|----------------|------------|
| 공정율 | 30%이상 50%미만 | 50%이상 70%미만 | 70%이상 90%미만 | 90%이상 100% |
| 사용기준 | 30%이상 | 50%이상 | 70%이상 | 공정율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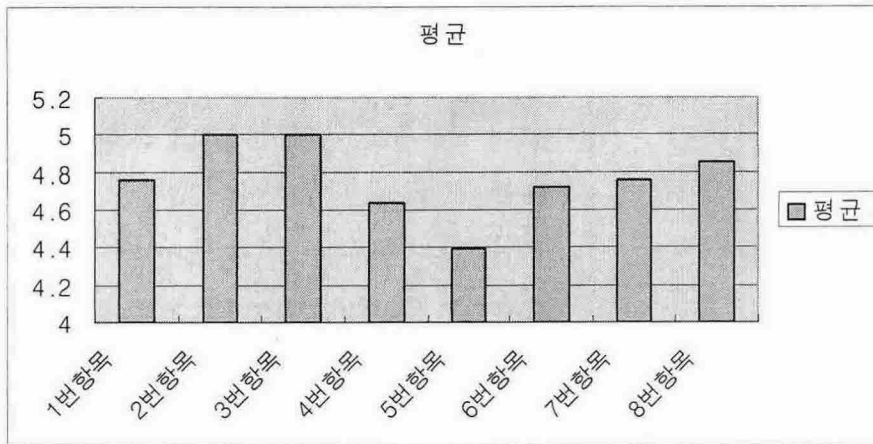
주: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함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3.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실태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을 보면 5번 항목이 가장 낮은 것은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안전기술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표 4>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평균



3.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문제점

가. 현행 제도상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 계상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나.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지식이 미흡하다. 타전공을 한 사람들이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다. 하청업체의 경우 공사금액의 부족으로 안전관리비를 시공에 쓰는 경우가 많으며 안전장구의 구입을 위한 비용이 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들 전부에게 안전장구 지급이 미흡하다.

마. 기술지도를 통한 안전관리자나 근로자의 의식을 개선해야하나 형식적인 기술지도에 의해 안전의식이 여전히 저조하다.

바. 공사우선주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 드물지만 아직까지도 안전보다는 공사시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현장소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차이가 남.

사. 일용직 근로자 건강검진 미흡.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서 자회사의 안전관리비를 투자하여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3.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선방향

가. 국가에서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

나. 공사에 대한 입찰시 공사 금액을 너무 낮추어서 입찰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최저입찰제의 법적 강화와 활성화해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현장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라. 일용직에 대한 건강검진은 현장여건상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해주어야 한다.

마.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의 강화 및 시행사업자의 법 준수이행 철저확인, 벌칙강화 및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4. 결 론

사업주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관리자의 교육뿐 아니라 사업주들의 교육제도를 법으로 제한하거나 연수를 통한 의무 교육으로 전환해야하며,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리감독자들에게는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현장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병행하며 이러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가시설물인 가설통로, 표준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보호구등은 작업자들의 재해와 직결되는 부분들은 안전관리비를 규정대로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건설업체들의 경우 공사비의 부족으로 안전관리비를 공사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고 유동성이 많아 보호구의 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주의 이윤추구, 관리감독자의 의식결여, 안전관계자의 책임의식 미흡 등으로 안전관리비의 오사용등의 문제가 있는데 안전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며 보다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참고문헌

1. 김 명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5
2. 노동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 2002-15호 (2002. 7. 22)
3. 노동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건설안전 추진반 2003. 9